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265p 최하단	문제-본문	*주2)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업무사용비율 계산방법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 1,500만원 초과인 경우 : 1천만원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주2)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업무사용비율 계산방법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 1,500만원 초과인 경우 : 1,500만원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304p 번호 : 12	문제-표	**12**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위드의 경리부장은 손익계산서에 다음과 같이 반영하였다. 익금항목과 관련하여 세무조정이 필요 없는 것은? 가. 매출액 1억원은 매출할인 1천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상하였다. 나. 본사건물을 임의로 평가하여 평가차익 3억원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였다. 다. 본사건물의 일부를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으로 3억원을 받았고 간주임대료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였다. 라.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품을 처분하여 2천만원의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였다. ① 가, 나 ② 다, 라 ③ 가, 라 ④ 나, 다 해설 나.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아닌 일반적인 평가손익은 법인세법상 인정하지 아니한다. [익금불산입 3억] 다. 차입금 과다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내국법인이 아니므로 간주임대료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익금불산입 3억]	**12**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위드의 경리부장은 손익계산서에 다음과 같이 반영하였다. 익금항목과 관련하여 세무조정이 필요 없는 것은? 가. 매출액 1억원은 매출할인 1천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상하였다. 나. 본사건물을 임의로 평가하여 평가차익 3억원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였다. 다. 본사건물의 일부를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으로 3억원을 받았고 간주임대료 500만원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였다. 라.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품을 처분하여 2천만원의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였다. ① 가, 나 ② 다, 라 ③ 가, 라 ④ 나, 다 해설 나.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아닌 일반적인 평가손익은 법인세법상 인정하지 아니한다. [익금불산입 3억] 다. 차입금 과다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내국법인이 아니므로 간주임대료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익금불산입 500만원]
311p 번호 : 30	문제-본문	**30**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주)A의 제8기의 기부금과 관련된 다음 자료에 의하여 법인세법상 제8기에 손금불산입되는 지정기부금은 얼마인가? 1. 기부금외의 세무조정을 완료한 후의 소득금액 100,000,000원 2. 기부금지출내역(전액 현금지출) ①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 10,000,000원 ② 불우이웃돕기성금 20,000,000원 ③ 고등교육법에 따른 사이버대학에 시설비로 지출한 기부금 40,000,000원 3. 제7기에 발생한 세무상 이월결손금 30,000,000원 4. 제6기에 발생한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이월잔액 5,000,000원 ① 8,000,000원 ② 9,000,000원 ③ 10,000,000원 ④ 11,000,000원 해설 •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손금산입액) × 10% 20,000,000 − [{(100,000,000 + 70,000,000) − 30,000,000 − 40,000,000 − 10,000,000} × 10%] = 11,000,000 •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 : 법정기부금 • 불우이웃돕기성금 : 지정기부금 • 고등교육법에 따른 사이버대학에 시설비로 지출한 기부금 : 법정기부금	**30**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주)A의 제8기의 기부금과 관련된 다음 자료에 의하여 법인세법상 제8기에 손금불산입되는 지정기부금은 얼마인가? 1. 기부금외의 세무조정을 완료한 후의 소득금액 100,000,000원 2. 기부금지출내역(전액 현금지출) ①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 10,000,000원 ② 불우이웃돕기성금 20,000,000원 ③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로 지출한 기부금 40,000,000원 3. 제7기에 발생한 세무상 이월결손금 30,000,000원 4. 제6기에 발생한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이월잔액 5,000,000원 ① 8,000,000원 ② 9,000,000원 ③ 10,000,000원 ④ 11,000,000원 해설 •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손금산입액) × 10% 20,000,000 − [{(100,000,000 + 70,000,000) − 30,000,000 − 40,000,000 − 10,000,000} × 10%] = 11,000,000 •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 : 법정기부금 • 불우이웃돕기성금 : 지정기부금 •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로 지출한 기부금 : 법정기부금
		수정 사유	출제의도는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시설비로 사이버대학에 지출한 기부금을 법정기부금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었으나, [고등교육법에 따른]이라는 지문으로 인하여 지정기부금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수정함
362p (5) 성실신고확인제도	문제-본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를 선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해당 부분 삭제
391p 번호 : 38	문제-표	• 130만원 초과시 근로소득세액공제 : 근로소득산출세액 × 55%	• 130만원 이하 근로소득세액공제 : 근로소득산출세액 × 55%
399p	문제-본문	② 등록증의 교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다만,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 5일 이내에서 연장가능	② 등록증의 교부 신청일로부터 2일(2020년 7월 1일 이후) 이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다만,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 5일 이내에서 연장가능

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